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0. 19 선고 2022가단1016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김동길

피 고 1. A

2.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9. 21.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9,446,807원과 그 중 79,035,339원에 대하여 2021. 8. 17.부터 2021. 12. 31.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2022. 6. 11.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20. 12. 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20. 12. 9. 접수 제516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① 2019. 8. 5. 보증금액을 2,0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을 2024. 8. 2.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D은행 E금융센터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② 2020. 4. 9. 보증금액을 5,0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을 2025. 3. 20.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고, ③ 2021. 3. 17. 보증금액을 1,0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을 2023. 3. 10.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 당시에 피고 A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되, 원고가 금융기관에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그 변제금과 지연손해금, 체당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의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2021. 4. 3.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1. 8. 17. 위 D은행에 79,938,819원을 변제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원리금은 합계 79,446,807원(= 대위변제금 79,938,819원 + 체당금 411,246원 - 회수금 903,480원 + 확정손해금 222원)이다.

4) 한편, 피고 A은 2020. 12. 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F(피고 A의 배우자이다)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20. 12. 9. 접수 제5163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피고 A은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7,940만 원, G조합에 3억 2,500만 원, D은행에 7,000만 원, H에 4,500만 원, I에 4900만 원, J조합(천안두정점)에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다른 금융기관들에도 채무를 부담하는 등 합계 628,582,80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4억 6,86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토지만을 가지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A과 피고 회사가 2020. 12. 7.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A의 재정상황이 어려워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피고 A의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2021. 4. 3.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피고 A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 회사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회사의 선의 여부

1) 피고 회사는, 피고 A의 배우자인 F의 어선에 어망 등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면서 그 물품대금채무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그 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 A의 채무초과 내지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F과 외상거래를 하면서 그 배우자인 피고 A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고, 이를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회사가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잡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 설정으로 인하여 피고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회사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최재원

별 지 목 록

1. 충남 당진시		대 418.3㎡
2. 충남 당진시		전 46.0㎡
3. 충남 당진시		대 154.0㎡
1. 충남 당진시		전 203.0㎡

-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표시

접수일자 : 2020. 12. 9.

접수번호 :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제51638호

채권최고액 : 100,000,000원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주 소 : 전남 목포시

- 이 상 -

